

문서번호	주택과-4432
결재일자	2016.2.17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보도여부	

★주무관	주거환경관리팀 장	주택과장	도시관리국장	부구청장
신경식	김경수	임종배	이동일	02/17 하철승
협 조				

**강북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정비계획**

2016. 2. 12.

**도시관리국**  
(주 택 과)

# 강북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정비계획

우리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중 전문가 위원의 임기만료로 인하여 위원회 활동에 관한 균형 있는 편성과 위원회 연속성을 고려하여 전문 분야를 대표하는 분을 새로이 추천 받아 심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재정비하고자 함

## I 관련 근거

- 주택법 제43조제9항
-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9조(위원회의 구성)

## II 위촉 사유

- 분야별 전문가의 임기만료에 따른 새로운 전문가 위촉
- 분야별 안배에 의한 균형 있는 편성

## III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

- 자격요건
  -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 공무원
  - 법학·회계·공동주택관리·조경·토목·전기·가스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(職)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
  - 변호사·공인회계사·세무사·건축사·주택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
  -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
  -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

위원회의 구성: 13명 이내

- 위 원 장: 부구청장
- 부위원장: 위원 중에서 호선
- 당연위원: 주택, 건축 토목, 복지, 문화 등 업무를 주관하는 소속 부서장 4명 이내
- 민간위원: 9명 이내
  - 주민대표: 4인 이내
  - 법률회계공동주택관리공동체조경건축토목전기가스재난관리분야 전문가 5명 이내(분야별 안배)

위원의 임기

- 2년으로 하되 1차례에 한하여 연임(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임)

위원회 정비 현황

구 분	위원 정비 현황					정비사유	
	변 경 전			변 경 후			
	위 축 일 성	명	직 업	위 축 일 성	명 / 직 업		
1	당연직		부구청장		변동없음		
2	위촉직	안전분야	11. 8. 30.	구자흡(남) 삼성엔지니어링 전문위원	16. 3.	이용석(남) 안전관리자문위원,신우건축사	임기만료
3		건축분야	11. 8. 30.	김병완(남) 강북구 건축사회 회장	16. 3.	김기철(남) 예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	임기만료
4		법률분야	11. 8. 30.	전 성(남) 강북구 고문변호사	16. 3.	권성연(여) 강 북 구 고 문 변 호 사	임기만료
5		공동주택 관리분야	11. 8. 30.	박정희(여) 주택관리사협회 강북지부장	16. 3.	유수경(여) 주택관리사협회 강북지부 총무	임기만료
6		주민대표 (구의원)		15. 4. 6.	유인애(여)	-	변동없음
7			15. 4. 6.	김도연(여)	-	변동없음	
8			15. 4. 6.	이용균(남)	-	변동없음	
9			15. 4. 6.	김명숙(여)	-	변동없음	
10	당연직	문화체육국장			-	변동없음	
11		푸른도시국장			-	변동없음	
12		도로관리국장			-	변동없음	
13		교통행정국장			-	변동없음	

## □ 위원회 기능

-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
- 지원금액의 증감 결정, 지원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
- 그밖에 공동주택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## □ 회의 운영

-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공동주택 업무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둔다.
-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.
-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이거나 당해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.
-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정한다.
-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※ 위촉장 수여: 「2016년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」 개최시 위촉장 수여(3월 예정)

붙 임 위촉장(안) 1부. 끝.